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유정규 · 유광민 · 최동근 · 이순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A Study of Support for Small-Medium Sized High quality Agri-Products

Jeong-Gyu Yu · Kwang-Min Yu · Dong-Geun Choi · Sun-Jin Lee

Kore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Rural Societies

I. 서 론

최근들어 수입개방의 전면화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1992년 6월 [리우회의]를 전후로 해 전지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GATT-UR협상 이후 국제무역 협상에서도 주요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농업이 환경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무역규제와 연결시키려는 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보전형 농업은 순수 민간조직(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중반 '흙을 살리는 바른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정농회 선각자들의 이념적인 활동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한국유기농업환경연구회와 자연농업중앙회가 발족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발표비 제조, 미생물효소 사용, 순환농법 등의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유기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는 새로이 지역 단위에서 유기농업 생산자단체가 조직되기도 했으며 기존의 농민단체에서도 유기농업을 운동의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시작

했고 농협에서도 우수농산물 생산작목반 조직을 통해 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신협에서도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보전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소비단체협의회가(현 환경농업단체연합회)¹⁾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정부에서도 94년 12월, 직제를 개편해 농림부내에 환경농업과를 신설하면서 환경보전형 농업 정책개발과 육성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95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을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과 연계하여 실시했고 96년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환경농업육성법"을 97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사례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점이나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의 핵심사업이었던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하 중소농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중소농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중소농지원사업은 95년부터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과 연계해 중소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중소농단이 조정되고 단지내 시설이 완성되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을 해 본 단지를 조사해 환경보전형 농업의 목표나 내용(환경 부하가 적은 농업체계로의 전환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농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의 개발과 정책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의의

1. 환경보전형 농업의 국제적 추세

GATT-UR협상 이후 WTO체제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국제화·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환경과 관련한 국제협약의 체결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그린라운드 협상이 제기되어 환경오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1997년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이 예정된 우리나라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진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진출, OECD의 가입 등으로 국제적 규범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제적 규범의 준수는 우리 농업, 농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WTO협정 전문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탐구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와 부합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WTO체제는 기본적으로 밀바탕에 (환경보전), (환경보호)를 깔고 출발했으며 WTO의 최고의결기관인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보전과 무역증진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²⁾에서는 178개국이 참가하고 1,200개 이상의 NGO(비정부원조조직)도 출석, 약 3만명이 참가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호와 지속적 개발을 위한 지구차원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 등 5개문서((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아젠다 21], [삼림원칙 선언])를 채택했다.

(리우선언)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람과 국가의 행동원칙을 나타낸 것으로 당초에는 (지구헌장)이라는 이름이 예정되었는데 개발도상국측이 개발가능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해 (리우선언)이 되었다. 이 선언은 전문과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선언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정

리한 것이 (아젠다 21)이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각국의 이행과제를 4개분야로 분류하여 분야별 정책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아젠다 21)은 전문과 4부4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보전과 인류의 기초수요 충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저개발 국가에 대한 배려 등을 담고 있다.

(아젠다 21)의 내용은 공정하고 건전한 지역사회의 유지가 자연자원과 환경의 보전,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의 위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국제적인 지구 환경논의의 기초규범이며 특히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아젠다 21)의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특히 (아젠다 21)의 제14장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12개분야의 행동기초, 목적 및 행동실시 수단을 밝히고 있다.

OECD에서는 1992년부터 농업위원회와 환경정책위원회의 합동 작업부인 (농업과 환경)이 설치되었고 1993년부터는 ① 농업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분석 ②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및 측정 ③ 농정개혁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는 각국의 농업과 환경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농업환경지표 13가지를 잠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업환경지표는 농업에서의 영양분(질소, 인) 이용정도, 농약의 사용, 농업에서의 물 이용 정도, 농지의 이용과 보전, 토양의 질(비옥도 등), 농업용수의 수질, 영농관리, 농업관련 사회문화적 사항 등이다.³⁾

한편 OECD는 환경관련 농업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방향은 환경보전에 있다. OECD는 농토 훼손 및 자연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농업자체에 있다고 보고 경제적 수단, 규제, 교육을 통하여 농업의 환경파괴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기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경제적 수단이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환경파괴적 활동에 대해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농업의 경제외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과징금 및 세금, 보조금 또는 보상금, 보조금이 붙은 과징금 시스템⁴⁾, 매매가능배출권⁵⁾, 예탁금을 제시하고 있다. 제품과징금, 배출과징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비료 및 농약에 대한 과징금을, 핀란드에서는 인산비료 및 농약에 대해, 덴마크에서는 농약에 대해, 또 네

(아젠다 21)의 제14장,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 주요 내용 및 수단

- ① 농업정책의 재검토, 계획입안 및 종합적 프로그램 작성
 - * 전 과정의 식료공급을 포함한 식료의 안정적 확보에 관계되는 정책검토
 - * 무역, 가격정책, 외환, 농업보조금, 조세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의 농업정책 재검토
 - * 인구동태의 재검토, 농업생산 한계지역의 재검토
- ②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민참가의 확보 및 인재의 개발
 - * 토지, 물, 삼림자원에 대한 접근의 달성을 위한 기존조치의 재검토,
 - * 여성 및 기타 불리한 위치의 집단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보증
 - * 제도의 재편성과 강화에 의해 촌락개발을 위한 지방분권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 ③ 고용 및 하부구조 개발의 다양화에 의한 생산 및 농업system의 개선
 - * 농가의 종합적 관리기술의 개발 및 홍보
 - * 촌락에 집적된 투자자금의 이용에 의한 자금 네트워크의 추진과 개선
 - * 농업과 임업 간의 경제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확인
- ④ 농지계획에 관한 정보 및 농업교육
 - *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농지와 기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입안, 관리, 교육, 홍보의 강화
- ⑤ 농지의 보전 및 지력의 회복
 - * 지력저하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 * 지력의 보전과 회복 계획의 입안, 시행과 시행 때 지역사회와의 참가를 촉진하는 유인의 제공
- ⑥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위한 물과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위한 촌락 개발
- ⑦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 식료 및 식물유전자원의 평가와 이용에 관한 공적기관에 의한 연구의 강화
 - * 특히 개도국에서 식료와 식물유전자원을 위한 시설의 증설 확충
- ⑧ 동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 멸종위기에 있는 종에 대한 육성, 보존계획의 작성
 - * 10년 계획에 의한 전 품종목록의 책정
- ⑨ 병해충, 농약의 종합적 관리 및 제어
 - * 안전하고 적절한 농약의 사용에 관계되는 정책과 기구의 재검토와 개혁
 - * 병해충의 발생과 농약사용의 관리와 감시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제의 채용
- ⑩ 식량생산의 증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비료 투입
 - * 지속가능한 농업에 적합한 비옥도의 유지를 위한 전략 작성과 적용
 - * 환경, 식물의 성장, 인체에 해롭지 않는 형태의 유기, 무기 폐기물의 토양에 의한 리사이클 장려
- ⑪ 촌락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변혁
- ⑫ 오존층의 감소에 의한 자외선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덜란드에서는 과잉배설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⁶⁾

이와같이 국제적 추세는 환경과 친화적인 생산체제의 개발,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적 수단의 개발 및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한 등의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지역농업과 환경보전형 농업⁷⁾

가. 지역농업의 대두와 그 배경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선진공업국과 발전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는 남북문제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되었다. 그 동안의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농업이 강조되면서 <녹색혁명>이라는 형식으로 농업진흥정책이 시도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녹색혁명>에 의한 농업진흥정책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역사를 거의 모방해 경제 또는 공업 우선 개발방식을 택해 지역자원을 도시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적시켰다. 그리하여 각종 지역자원의 낭비와 파괴 등 각종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농촌사회의 격차를 심화시켰음은 물론 농촌사회의 파괴를 야기하여 농업,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그래서 1970년대 중, 후반부터 지역의 자립을 강조하는 분권적인 농업진흥정책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 [지역농업]론이 대두되는 배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경쟁력이 약한 농가의 이농과 중핵농가 육성정책에 대한 반성이었다. 개별경영의 규모확대는 농지의 황폐화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농촌지역의 공동화, 과소화가 촉진될 것이고 자연생태계 및 환경파괴를 야기한다. 결국, 농

업의 구조재편이 어렵기 때문에 겸업농가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농가의 이농을 촉진시켜 농촌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현재의 농촌에 포용하고, 지역의 모든 농업생산자원을 지역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한다는 것이다⁸⁾

[지역농업]을 제기하는 문제 의식은 소위 '후계자'라고 선택받은 사람들과 전업농, 그리고 그들 중심의 규모확대와 상업적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농정]을 비롯한 중앙집권적인 농업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의미한다. 즉, 경쟁력이 있든 없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주체는 '공존의 [지역사회]',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진흥과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농민, 농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국민 경제 또는 민족 전체의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농업은 사회와 경제의 운용을 위한 가치기준도 지금까지처럼 경제성, 효율성, 고속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성, 안전성, 안정성, 즉 <총체적인 유기적 합리성>을 높이 평가하는 즉, 산업, 경제만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에서 경제와 동시에 생활, 문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전환을 추구한다.

나. 지역농업론의 과제

① [지역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이다. <지역농가의 종합적 복지수준의 지속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합리적 생활태도를 토대로 하면서 공존공영의 인간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건강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유리성, 문화성 등이 추구된다.

② [지역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적 조건'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역농업은 [농업이 중심산업인 지역의 총체적 경영]이다. 국민생활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응한 안전한 농림산물의 공급, 물과 토양의 보전, 자연 환경의 형성과 보전, 역사와 문화 및 교육의 장소 제공, 국민보건의 장소 제공 등 농업의 다양한 기능들을 종합적 또는 고도로 발휘하는 것이 [지역농업]경영의 기본과제다. 그러므로 농촌의 지역경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간 + 자연자원 + 산업]의 조직화, 즉 농민의 조직화, 농촌의 지역자원의 조직화, 농업의 조직화를 이룩하고 그들 간의 상호 조화가 중요하다.

다.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은

첫째, 주체와 지역, 농업형태를 고려해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집단적 생산조직]의 형성과 육성이 되어야 한다.

둘째, 다음 단계로는 [논 이용형 농업경영]에서 더욱 발전된 [자원관리형 지역농장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현실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이 정착, 확립되어야 한다

라. 지역농업과 환경보전형 농업

환경보전형 농업은 지역이나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목표나 수단이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업과 환경문제의 조화를 위해 농지의 집약적 이용을 억제하며 농산물 생산에 따른 환경부하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경관 보전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보전형 농업은 두가지 의미로 분류된다. 하나는 환경부하의 경감, 환경부하가 보다 적도록 하는 농법을 말하는데 [환경에의 부하가 보다 큰 농업 또는 농법에서 보다 적은 농업, 농법으로 전환하는 것] 즉, system전환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전형 농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루어야한다.

그리고 두번째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농업, 농법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이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결국 환경보전형 농업은 환경부하가 적은 농업체제로의 전환의 방향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산지가 70%인 우리나라의 환경보전형 농업은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평야지대와 달리 여러가지 이유로 지역사회가 붕괴될 위험이 큰 지역이다. 현실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지역)사회]이 되기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이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보전형 농업은 농업생산의 환경은 물론 자연생태계의 보전, 지역사회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 국토자원의 유효한 이용 등의 관점, 즉 지역농업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보전형 농업

정책이 토지,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미래를 위한 농업자원의 보호와 농가소득의 유지,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 참여농가에 대한 직접지불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환경보전형 농업은 농업과 환경문제의 조화를 위해 농지의 집약적 이용을 억제하여 농업생산에 의한 환경부하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경관보전과 야생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을 “환경 측면에서 신중을 요하는 지역”(환경보전 농업지구)으로 선정하여 교부금을 지급하는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민에 대한 보조금, 환경보전 농민에 대한 장려금, 가축조방화 생산장려금, 전작 장려금, 휴경장려금 등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환경보전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상위에 두고 생태계 보전, 수질 오염 부하의 경감, 화학물질의 잔류억제, 토양보전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약, 화학비료의 투입을 삭감하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도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물질순환기능을 되살려서, 생산성과의 조화에 유의하면서, 토양의 조성을 통해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에 의한 환경부하를 경감시키는 지속적인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 일본에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유형을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1유형의 내용은 땅살리기 등 기존의 기술을 활용해 가능한 범위에서 화학비료, 농약을 절감해(관행의 2할 정도 절감) 환경부하를 경감시키는 것이고 2유형은 리사이클농업을 통해 투입재의 감축수준에 따라 감농약, 감화학비료부터 무농약, 무화학비료까지 다양한 수준의 저투입농업과 유기농업이라고 구분하고 있다.¹¹⁾ 그러나 일본 농수성은 96년 12월 유기농산물 등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3년이상 합성자재의 사용을 중지한 포장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전환기간 중의 것도 포함)과 무농약, 무화학비료, 감농약, 감화학비료제배 농산물을 특별제배 농산물로 구분하기로 했다.¹²⁾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뜻하는 다양한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 ‘환경농업’으로 부르기로 했으며¹³⁾ 이에 따른 내용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케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중소농지원정책 수립과정

WTO체제 출범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중소농¹⁴⁾의 특색을 살린 영농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중소농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중소농지원대책은 94년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농어촌발전위원회]¹⁵⁾의 건의가 반영된 정책이다.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농업이 지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간과해왔던 경제주의 또는 능률지상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농정의 기본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산업적 특징에 따른 발전목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 농림수산업의 유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또 농약이나 화학비료와 같은 합성화학물질의 투입량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투입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발과 보급,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지원, 환경보전형 농산물에 대한 환경마크제 실시, 환경보전형 농업 전담부서 설치,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WTO체제 출범에 대응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과 (WTO체제 출범에 대응 농림어업부문 기본대책)에 ‘중소농지원대책’으로 나타나고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에서 좀더 구체화되어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란 명칭으로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소농지원대책’에서는 대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중소농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다. 즉, 대규모 전업농을 목표로 한 규모확대 정책에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 되는 중소농의 소득증대 대책이다. 중소농으로 하여금 유기·자연·토종농업 등에 의해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해 이를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여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환경보전형 농업단지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수질을 보호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없애거나 감축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유기·자연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중소농의 이점을 살려 고품질농산물과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해 품질경쟁력을 확

보하고,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해 중소농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4.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 체계

가. 중소농지원사업의 목표 및 내용

① 중소농지원사업의 목표 : 해마다 중소농단지를 100개 조성

중소농지원사업의 목표는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 농업에 의해 소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단지를 지역별 여건¹⁶⁾에 맞게 매년 100개단지(2004년까지 1,000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즉 유기 자연 토종 농업단지를 해마다 100개씩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의 육성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형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단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품질인증 등의 유통지원을 할 계획이다.

② 내용 : 단지에 필요한 시설(공동, 개별)을 지원

단지에 필요한 시설은 공동시설과(토착미생물 생산시설¹⁷⁾, 예냉시설, 냉장차) 개별시설(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로 나누어 공동시설에 1억5천만원과 개별시설에 1억원으로 단지당 2억 5천만원(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1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실정과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단지당 사업비 범위내에 공동 개별시설 상호간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의 조정이 가능하다.

③ 단지의 규모 : 10ha이상 규모의 단지 구축

단지의 규모는 전술한 소유농지 1.0ha이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유기 자연 토종농업조직, 우수농산물 작목반, 영농

조합법인 등 복합경영 농가조직)으로서 10ha이상 규모의 단지를 구축하여야한다. 단, 단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 군수는 소유농지 1.0ha이상 규모의 농가도 참여토록 하거나 10ha이하의 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작목은 벼를 기본으로 한 모든 작목

단지내의 작목은 벼를 기본으로 하여 일반 밭작물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모든 작목인데 단지에는 벼농사 농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나. 추진체계

① 민간단체의 추천서를 통한 중소농사업 참여

이 사업의 시행체계는 대상단지로 선정되고자 하는 영농조직이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 농협, 축협 및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회원인 각 단체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추천기관의 지도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에 신청하면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지를 확정한다.

② 대상자 선정 :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 위주의 환경보전형 농업 영농단체

다.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시설에 대한 소유 및 이용자를 명시하고 단지 참여농가의 합의를 얻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 승인된 단지의 사업내용(시설, 참여농가) 변경은 시장, 군수의 변경승인을 얻으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

라. 사후관리 및 품질지도

① 기술 경영지도는 추천기관 단체에서 지도책임자를 선정해 책임지도(사업계획서 제출시 추천서에 책임지도자를 명시

표 2-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95년	96년	97년	98-2004년	계
단지수	100	100	118	682	1,000
계	250	250	295	1,705	2,500
국고	125	125	118	682	1,250
지방비	50	50	59	341	500
융자	25	25	59	34	1250
자부담	50	50	59	341	500

※ 융자조건 : 년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료 : 농림부, [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17쪽

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 군수에게 제출)

② 단지별로 생산된 농산물은 희망에 따라 품질인증 또는 보증을 받아 출하

③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단지를 년 1회 이상으로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사업비 회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실태

1. 중소농단지 현황

95년부터 2년간 유기농업단지 98개소, 자연농업단지 55개소, 유기 자연농업 혼합단지 44개소, 기타 3개소로 총 200개의 중소농단지가 조성되었다.¹⁸⁾ 지역별로 보면 경북 35개소와 전남 34개소로 제일 많았다.

단지규모는 총 2,216ha로 2,118농가가 참여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에 36개소, 중산간지 99개소, 평야지에 65개소가 조성되어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가 68%를 점하고 있다.

또한 1개단지에 평균 10.6농가가 참여했으며 40대이하인 단지대표자는 144명이었으며 이들 중 125명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단지에 설치된 공동시설은 발효퇴비사 등 건축물이 258동(1만5천평), 배양기, 로다, 톱밥제조기, 배합기 등 부대장비가 527대, 예냉시설이 84동, 냉장차가 65대였다. 개별시설로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969동(7만7천평)과 하우스 1,130동

(22만5천평)이 설치되었다.

또한 추천기관및 단체는 <표 3-2>와 같이 유기농업협회 등 환경농업 민간단체가 130개소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지도소 45개소, 농협 15개소, 농검이 10개소였다.

2. 실태 조사지 개황

가. 조사 개요

① 조사 내용

- 단지의 구성원간 협력 및 협동의 내용
- 농업시설 투자현황
- 환경농업 기술 및 생산
- 단지의 농산물 유통

② 조사방법

- 설문조사를 통한 현지 개별 면담
- 대표자 개인 면담(의식조사)

③ 조사대상의 한계

○ 중소농사업이 95년 처음 실시되었고 관련시설(공동시설, 개별시설)이 늦게 설치되었으며 형식적으로 12월 말에 종결되었으므로 단지내에서 생산, 유통을 통한 소득의 증대여부가 불분명했다.

○ 조사대상 총 100개소 중 지역별로 경기와 강원, 충남, 전북(경북 일부)이 빠져 있다.

○ 조사대상은 자연농업협회가 추천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는데 조사기간이 농번기(10월)인 관계로 농민과 연락이

표 3-1.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단지 도별 현황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계
95년	14	15	10	9	17	8	9	16	2	100(개소)
96년	13	11	11	9	17	10	9	19	1	100(개소)
합계	27	26	21	18	34	18	18	35	3	200(개소)

표 3-2. 중소농단지 추천기관 및 단체 현황

	유기농업협회	자연농업협회	정농회	한살림	흙살림	농협	지도소	농검	계
95년	39	25	3	2	2	5	17	7	100(개소)
96년	24	22	3	1	9	10	28	3	100(개소)
합계	63	47	6	3	11	15	45	10	200(개소)

된 곳을 우선적으로 방문한 결과다.

○ 설문내용이 중소농사업단지 대표자 중심이었다.

나. 조사대상 단지 전체 현황

조사대상 단지는 지역별로 경기 2개소, 충북 6개소, 경북 4개소, 전남 4개소로 총 16개소였다. 위치별로는 상수원보호구역 3개소, 중산간지 9개소, 평야지 4개소였으며 추천단체 및 기관은 자연농업협회 7개소, 유기농업협회 3개소, 농촌지도소 2개소, 흙살림, 한살림, 농협, 농검이 각각 1개소였다.

다. 대표자의 특성

① 중소농단지사업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의 연령층은 대부분 40대중반(조사대상의 75%)이었고 고졸이상의 고학력이었으며 환경보전형 농업경력은 5년이상이었다.

대표자의 연령층이 젊고 고학력이라는 것은 중소농사업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조건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중소농사업 발전에 보다 진취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인적 토대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용이 가능하고 수량감소등 환경농업의 위협에 대해서 도전적이다.

또한 단지 대표자들의 환경보전형 농업 경력은 5년이상이 14명(조사대상의 87.5%)으로 나타나 대표자들 스스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에 숙련되어 환경농업에 대한 의지 및 참여능가들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기술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환경농업 경력이 짧은 대표의 경우도 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자 외의 단지구성원들은 환경농업 경력이 길지 않다. 단지구성원의 연령은 주로 40대였으며 이것은 환경보전형 농

표 3-3. 조사 대상 단지의 개황

		조사단지수			조사단지수
지역별		16 (개소)	추천단체		16(개소)
	경 기	2		자연농업협회	7
	충 북	6		유기농업협회	3
	경 북	4		농 촌 지 도 소	2
	전 남	4		흙살림연구소	1
위치별		16(개소)		한 살 림	1
	상수원보호구역	3		농 협	1
	중 산 간 지	9		농산물검사소	1
	평 야 지	4			

표 3-4. 단지 대표자의 연령 및 학력, 환경농업 경력

문 항	응답 내용	개소
연 령 분포	30 - 40	3
	40 - 50	9
	50 이상	4
학 령 분포	국 졸	1
	중 졸	2
	고 졸	9
	대 졸	4
환경농업 경력	1-3년 미만	0
	3-5년 미만	2
	5-10년 미만	7
	10년 이상	7

표 3-5. 단지 참여농가 비교

단지구성원	3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5명이상	계
(A)				2	1	2	5	4	2	16개소
(B)	1	1	2	2	1	2	3	2	2	16개소

주 : (A) 사업신청시 제출한 서류상 인원별 단지현황
 (B) 조사시 실제로 단지구성인원별 단지 현황

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단지대표자들이 환경보전형 농업을 선택한 것은 스스로 농약중독을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농약중독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경우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양심적인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개인적 신념에서 선택한 경우가 전체의 63%로 가장 많았다. 환경보전형 농업단체의 교육 및 장려 때문에 선택한 경우가 그 다음순이다.

③ 중소농사업에 참여하게된 동기를 대표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확산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환경보전형 농업에 참여하게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개인적인 신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약중독을 경험하거나 주변의 농약중독 현상을 목격해 종교적인 양심상 과다한 농약 및 비료 사용을 자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전체의 53%가 응답했다.

또한 동시에 정부의 자금지원폭이 다른 지원사업보다 클 뿐만 아니라(보조율이 70%) 수확량의 감소를 보상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높다는 생각에서 참여한 경우도 많았다.

라. 단지 구성 농가 참여 현황

중소농단지에는 9-11명의 농가가 참여해 전체조사단지의 69%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중소농사업단지의 10ha 규모를 짜맞추기 위해 이름만 계획서에 올려 놓은 경우도 있었다. 중소농사업 계획서 신청시 10명으로 단지를 구성해 확정된 후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5-6명인 단지가 3개소나 되었다(표3-5 참조). 따라서 중소농사업에 필요한 농가수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단지중 실제로 3명의 농가만이 참여해 필요한 자금을 받아 나누어 개별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경북의 도개 단지의 경우는 11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5명은(30대중반) 실제 활동을 하며 나머지 구성원(50대이상)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단지구성시 출자를 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비는 공동시설 설치비를 제외하고 5명의 구성원이 개별시설(비닐하우스, 축사)를 설치하는 대신에 퇴비를 참여농가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3. 단지 운영 체계 및 구성원 간의 협력 관계

가. 단지화 이전의 조직이나 단체

조사대상단지는 중소농단지 이전에도 환경보전형 농업단체 지회, 공동체, 작목반 등의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지를 구성하기 전에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63%였다. 중소농사업 이전에 정농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등 환경농업단체의 지회로 활동했거나 공동체, 작목반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단지조성전 조직이나 단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환경농업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나. 단지 운영 체계

① 단지를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구가 있는 단지는 12개소(75%)였으며 대표와 총무의 임원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었다. 임원이 대표와 총무로 구성된 이유는 운영상에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함을 의미한다.

중소농사업에 참여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 곳이 4개소가 있었는데 공동시설에 대한 소유 등 장기적으로 중소농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거나 구성원간의 협동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② 단지구성원간의 정기모임은 12개소가 있다. 그러나 정기모임이 2주일에 한 번 이상 개최되는 단지는 전체의 19%에 불과하며 나머지 단지의 경우는 정기모임이라 할 수 없다고 하겠다. (표3-6 참조)

③ 정기모임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영농보고, 유

표 3-6. 정기모임 개최 횟수

일주일	격주	매월	격월	분기	6개월	없다	합계
2	1	5	1	2	1	4	16(개소)

표 3-7. 단지내 협동의 내용(중복응답)

공동생산	농기계이용	가공과정	상표사용	판매과정	공동구입	공동시설이용
2개소	5	1	4	5	7	5

통문제, 환경농업기술 및 경영에 대한 정보교환, 중소농사업 단지 운영방안, 기술교류 등의 다양한 내용이었다.

충북의 송학애농단지의 경우는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의 작목선정 및 배분문제까지도 정기모임에서 논의하고 있다.

조사대상중 4개단지는 정기모임에서 주로 기술교류만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한달에 한 번 미만(격월로, 분기별, 6개월)의 정기모임 개최횟수(4단지)와 거의 일치한다. 물론 기술교류는 필요하나 정기모임에서 논의된다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정기적이라는 말이 유명무실함을 보여준다.

다. 구성원간의 협력관계

중소농사업 이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과정은 농기계 이용, 원료나 재료 구매, 공동시설 이용 등이다. 이러한 협동내지 협력의 내용이 단지구성 전보다 더 강화되거나 달라진 단지는 10개소로 전체의 63%이다.

〈표 3-7〉에서 본 바와같이 중소농단지에서는 주로 공동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료, 우렁이, 퇴비구입과 같은 공동시설 이용에 필요한 재료를 단지구성원이 공동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단지구성원들은 농기계, 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가공과정에 참여하는 단지는 충북의 소수유기농업단지뿐인데 이것은 중소농사업 참여 이전부터 계속해 왔다. 상표사용의 경우도 중소농사업 이전부터 직거래 형태로 계속 해오던 일이다. 중소농단지에서 공동생산이 이루어진 단지는 역시 중소농단지 이전에 공동체의 형태로 이미 진행되었던 단지이다.

4. 농업시설 투자 현황

가. 단지의 투자규모

① 단지당 총 투자규모는 2억5천(보조 1억7천5백, 용자 2천5백, 자부담 5천만원)에서 4억까지로 나타났다. 2억5천만원보다 더 투자를 한 단지는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② 사업지침의 자부담(5천만원)보다 더 많이 부담한 단지는 조사대상중 절반이나 되었다. 사업지침대로 5천만원만 부담한 곳은 3개소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5천만원 보다 적게 한 곳이거나 하지 않은 곳이었다.

③ 자부담 조달은 주로 단지구성원 전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농협 일반대출(연 12.5% -14.5%)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단지(2개소)는 저축된 돈에서 자부담 비용을 충당한 곳도 있었다.

④ 추가 자부담은 공동시설에 대한 과대한 투자와 개별시설(하우스)의 규모를 크게 확장했기 때문이다. 공동시설에 대한 투자가 과대한 곳은 7개소였는데 이중 5개단지는 그 이유가 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구입자금때문이었다.

자부담 이하 투자단지는 공동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필요 개별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참여농가가 자부담을 내지 않고 정부 지원 지분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경우이다.

나. 공동시설 및 개별시설 설치 현황

① 공동시설의 내용

시설 및 장비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톱밥제조기, 건조분쇄기, 트랙터, 트랙터 로더, 공동퇴비사, 저온저장고, 냉장차 등인데 이중에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 14개소로 조사대상 전체의 88%나 설치되어 있었다. 충북의 ○단지의 경우는 톱밥제조기, 파쇄기,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경북의 ○단지에는 같은 미생물 혼합기, 배양기 등 2종류가 설치되어 있었다.

② 공동시설 설치

표 3-8. 공동시설의 설치토지

대표소유토지	구성원소유토지	공동소유토지	대표자개인임대지	농협소유토지
4(개소)	2	5	3	1

공동시설은 논(7개소)과 밭(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에서 개인소유 토지에 공동시설이 설치된 단지는 9개단지였다. 중소농사업의 장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된 공동시설에 대한 소유를 단지구성원 전체가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남 녹진회의 경우는 농협 소유 토지에 토착미생물 생산 시설이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농협조합장이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시험포를 만들어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에서 나온 퇴비를 직접 시험하면서 퇴비 제조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향후 중소농단지과 농협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공동시설 운영에 따르는 제반비용(전기료, 원료구입비)이 과다하기때문에 공동시설을 올바르게 활용해 중소농사업을 활성화시키는게 중요한데 시설을 중소농단지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일반농가도 사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게 바람직하다.

③ 공동시설 소유 이용 유형

공동시설의 소유와 이용방식에 따라 조사대상의 전체단지를 3가지로 유형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i) 개인소유 개인이용형 I : 공동시설을 단지대표자 개인의 토지에 설치하여 대표자 개인만 이용하는 단지로 3개소가 있었는데 이중 2개 단지는 대표자 개인이 자가 퇴비생산에 공동시설이 필요하여 공동시설을 자기 소유지에 설치한 곳이었다. 경기의 대흥단지는 사료용으로 공동시설이 필요하여 대표자가 설치하였으나 톱밥발효돈사에서 나온 퇴비를 단지구성원에게 공급하여 주고 있다.

ii) 공동소유 공동이용형 II : 공동시설을 공동소유하고 단지구성원 전부가 이용하는 단지로 12개소였다.

iii) 공동시설이 없는 단지 III : 중소농사업을 개별시설(하

우스)위주로 진행한 단지로 1개소였다.

공동시설을 개인소유하여 단지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개인소유 공동이용형의 경우는 없었다.

④ 개별시설(하우스 축사)은 새로 설치한 곳이 대부분(13개소)이었는데 개별시설의 설치 장소는 논이 4개소, 밭이 9개소로 나타났다. 밭이 많은 이유는 축사 설치에 밭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5. 공동시설이용 현황

가. 공동시설의 이용 선호도

공동시설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표 3-9>와 같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조사단지 중 6개소가 공동시설 중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톱밥제조기였다.

나.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가동현황

①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또는 발효기는 조사대상 16개단지 중 14개단지에 설치되어 있었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기계 가격은 1,3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차이가 나지만 사양이나 효능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 중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시운전만 한 경우가 3개소였고 퇴비가 너무 비싸 시운전 및 3회전 운행후 중지한 단지가 2개단지였다.

농한기에만 회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단지가 4개소였고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통해 사료로 이용하는 단지(축산위주농가) 2개소는 1년에 2달 가동하고 있었다.

미생물 생산시설을 년 200일정도 가동중인 단지는 흙살림 연구소뿐이었다. 흙살림연구소는 각종 연구나 실험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이다. 전남의 벌교한빛단지에서는

표 3-9. 공동시설의 이용 선호도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저온냉장고	냉장차	톱밥제조기	건초분쇄기	기타	공동시설없음
6(개소)	2	1	3	1	2	1

최대한 3개월을 사용한 적이 있다. 발효기로 이용하는 경북의 ○단지에서는 1회전 20일가량 유지하기 때문에 자가필요량만큼 생산(약 60일 가동, 즉 3회)하고 있다. 따라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단지 중 실지로 가동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지는 2개소뿐이었다.¹⁹⁾

②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용도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용도별 이용현황은 <표 3-11>과 같다.

사료제조용으로만 사용하는 단지는 1개소, 퇴비제조용으로만 사용하는 단지는 4개소, 다용도 사용단지는 6개소였다.

사료용으로 사용한다 해도 축산의 부산물을 경종부분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순환 system을 갖추고 있으면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현재의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용량이 단지의 규모 및 구성원에 비해 너무 크다. 지금과 같은 단지규모와 구성원이라면 소규모의 기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북 송학애농단지는 소규모기계(1983년 80만원으로 구입)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③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구성원 이용 현황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구성원 모두가 이용하는 단지는 8개소였다. 현재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이용율이 떨어졌는데도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고도 남는다고 응답한 단지가 7개소였다. 이것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 높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 이용 최대 3개월간 1천톤 생산이 가능하다. 경종농가의 경우 약200여 농가를 담보할 수 있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효능이 높다고 답한 단지는 10개단지였다. 그러나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이용효율은 현재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효능이 뛰어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단지와 신설단지와의 공동이용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④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사용 원료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주원료는 쌀겨, 깻묵, 생선, 음식찌꺼기, 톱밥, 축분 등이고 보조원료는 미생물제제이다. 사용원

료중 쌀겨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로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다. 주원료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곳이 14개소였고 보조재료는 외부구입이 4개소, 산에서 채취하는곳이 2개소였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어려움은 원료구입 문제라고 7개 단지가 응답했는데(표3-13 참조) RPC에서 원료구입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협과의 협력이 모색된다.

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에 의한 퇴비 공급 현황

퇴비공급은 <표 3-14>와 같이 단지구성원 모두와 지역의 농가, 인근 유기농가 및 일반농가까지 공급하고 있는단지가 6개소였다.

이중 지역의 농가에게 퇴비공급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표 3-11.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용도

문 항	응답내용	개소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용도	퇴비제조용	4
	사료제조용	1
	퇴비+사료제조용	4
	퇴비+사료+미생물증식용	1
	가동중지 생산시설없음	1 2

표 3-12. 구성원 이용현황

문 항	응답내용	개소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이용현황	대표개인	3
	구성원 전원	8
	일부이용	1
	주변농가이용	2

표 3-13.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사용시 애로사항

문 항	응답내용	개소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사용시 애로사항	원료구입문제	7
	기계이용률 감소	5
	무응답	2

표 3-10.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가동 현황

사용기간	시운전	3회전	농한기만이용	2달사용	3달사용	200일사용	계
단지수	3	2	4	3	1	1	14(개소)

표 3-14. 퇴비공급 현황

주변인근농가	단지구성원 전원공급	지역외 농가	시험포공급	단지구성원 일부공급	무응답
1	4	1	1	1	6

일시적인 것이다. 시험포 퇴비 공급은 퇴비제조 기술의 안정성을 위해 농협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단지이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은 각 단지별로 그 사양에 맞는 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경기 대흥단지는 사료용으로 발효기를 이용(발효기 가격 1500만원)하고 있었으며, 돈사에서 나온 퇴비를 단지구성원 모두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에 대해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관(농림부, 농협)이나 단체(환경농업단체연합회, 연구소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표 3-15. 냉장차 및 예냉시설 이용도

	낮음	보통	높음
냉장차	4		4
예냉시설	4	1	3

있다.

다. 냉장차 및 예냉시설 이용도

고품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구입한 냉장차와 저온저장고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유통망 미비로 냉장차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저조한 단지가 4개단지이고 냉장차 운행에 필요한 물량을 채울 수 없어 운임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²⁰⁾

저온저장고에는 저장할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이용률이 떨어진다. 저온저장고는 사용하지 않아도 월 8-12만원의 전기료를 내야 하는데 전남 ○단지의 경우, 전기료를 물기 위해 외부의 사과를 저장하고 있었다.

냉장차 운행이 가장 활발한 단지는 충북의 소수단지와 송학애농단지이다. 소수단지의 경우 중소농사업 이전부터 직거래시에 냉장차를 활용하고 여름철에는 매일 운송했다. 송학애농단지의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서울로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효율의 제고를 위해 단계적인 단지발전계획 및 지역농민, 조직간의 연계에 의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농협의 냉장차나 저온저장고 이용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6.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 및 기술

가. 환경농업 관련 단체 가입 및 활동

① 환경농업단체 가입

환경농업단체 가입은 16개단지 대표자 모두가 가입되어 있다. 이것은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음

표 3-16. 환경농업단체 가입동기

가입 동기	단지 (개소)
판로에 대한 조인	2
이웃 유기 농가 권유	2
환경농업기술교육	8
혼자 유기농업을 하기 힘들어서	4

을 나타내는 것이다.

환경농업단체에 가입한 동기는 환경농업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가입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환경농업 기술을 습득을 위해 가입을 한 경우가 8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혼자 환경보전형 농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입을 한 경우가 4개소였다.

② 단지의 대표자들은 환경농업단체에 복수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중 한국유기농업협회와 한국자연농

표 3-17. 참여단체 현황 (중복응답)

참여 단체	단지 수
미생물자연농업연구회	3
광 록 회	2
정 농 회	6
한국유기농업협회	7
한국자연농업협회	7
한 살 림	2
흙 살 림 연구소	5

업협회 등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이유는 환경농업 기술 등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보다 여러 환경농업단체에 가입하여 환경농업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추천단체가 A단체라 해도 A단체의 고유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B단체의 기술을 응용하여 자기 단지에 맞도록 변형 또는 응용한다. 유기농업의 대표적 기술인 토공과 천혜녹즙(자연농업)을 모두 이용하여 작물 재배를 하기도 한다.

③ 환경농업 기술 습득경로는 환경농업단체→독학→농협교육순였다.

이것은 환경농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환경농업 민간단체의 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환경농업 민간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의미한다. 환경농업단체의 교육은 1박2일, 3박4일, 5박6일 등 4종류였고 주로 숙박교육이었다. 교육방식은 강의식 교육이고 교육비는 교육기간마다 다르지만 7만원에서 20만원 정도였다.

특이한 것은 농협교육을 통해 환경농업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인데 이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환경농업에 대한 열의 정도에 따라 주변 중소농단지 구성원들의 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

표 3-18. 환경농업기술 습득 경로

환경농업단체 교육	11(개소)
독 학	3
농 협 교 육	2

보 전파에 대한 기회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④ 단지와 추천단체와의 관계

중소농지원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추천단체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추천단체의 역할은 단지의 대표 및 구성원들과 사업계획서 작성시에 상담 및 지도의 기능이고 사후관리 지도기능이다.

그전에는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전혀 없었던 전남의 ○단지에는 A단체의 환경농업교육을 처음 받고 중소농단지를 신청하였다. (A단체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또한 경북 ○단지의 경우는 B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신청했지만 공동시설(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특정의 시설을(B단체가 소개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추천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B단체의 경우 공동시설(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고 있었고 개별시설(축사)을 시공할 때도 소개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단지의 경우는 군에서 제공한 중소농사업지침의 설계도를 가지고 자체 시공한 후 C단체에 문의를 하려 했으나 C단체가 특허료를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문의하지

표 3-19. 추천단체의 사후지도 만족도

문 항	만 족 정 도	단지(개소)
추천단체의 지도 만족도	매 우 만 족	
	만 족	
	불 만 족	10
	보 통	2
	매우불만족	
	무 응 답	4

못했다.

중소농단지를 추천한 추천단체의 기술 및 경영지도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단지는 10개 단지이다. 추천단체의 지도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추천단체가 환경농업 기술 및 경영 지도능력이 부족하거나 구체적 내용이 부실한 일반적 내용만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단지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역할

단지의 대표자들은 그동안 환경농업단체의 역할이 교육 - 정보제공 - 판매알선 순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농업단체에서 경영지도를 받은 단지는 한군데도 없었다. 따라서 중소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지에 대한 합리적 경영지도와 기술지도가 함께 필요하다.

농협의 역할은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경영지도도 함께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환경농업의 홍보 및 확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

표 3-20.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역할

	환경농업단체	농 협	농촌 지도소
교 육	12(개소)	1	3
정보 제공	9	2	1
경영 지도		1	
판매 알선	5	5	
자금 지원		14	

향을 미치는 것이 농협이다. 농협은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를 통한 유통망 확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지도소에서의 기술지도 및 교육지도활동은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농촌지도소의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을 통해 다양한 환경농업에의 접근이 필요하다.

나. 환경보전형 농업생산 및 기술

① 토양 조성

14개단지에서 자기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부분

표 3-21. 지력개선 투입재료 (중복응답)

지력개선 투입재료	단지(개소)
퇴비사용	13
인근야산 부식토	
토양개량제	1
객토	
녹비작물, 두과작물	3

토양검정을 받았다.

토양검정의 특이사항은 3개단지가 유기물을 과다투입하여 토양내 유효인산 함량이 일반토양보다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질소성분 과다의 경우도 한군데 단지에서 나타났다.

단지의 지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재료는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13개소) 있고 녹비작물이나 두과작물을 활용하기도 한다. (3개소)

② 작부체계상 관리방법으로 윤작과 혼작을 한 경우는 5개 단지에 불과하며 나머지 단지는 계속 연작을 하고 있다. 이는 작부체계 순환에 의해 토양내 지력회복보다는 고투입 미생물체를 이용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③ 10a(300평)당 퇴비투입량은 우분의 경우 최대 10ton에서 최소 100kg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력이 회복되면 최소한의 퇴비사용으로도 농사가 가능하며 퇴비제조 노력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조사대상 전체단지중 6개소가 평균 10a당 퇴비를 2~5ton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퇴비를 10ton 이상 투입하는 단지도 6개소였다.

④ 10a당 퇴비투입량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 경험에 의존하

표 3-22. 10a당 퇴비투입량

문항	응답내용	단지(개소)
10a당 퇴비투입량	2ton 미만	2
	2ton- 5ton	6
	5ton-10ton	1
	10ton-30ton	4
	30ton 이상	2
퇴비투입량 결정방식	기존경험	12
	농촌지도소 권장량	
	환경농업단체권장량	
	부식함량 6%기준	1
	매년 같은량	1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퇴비투입량 결정을 작물의 생육상태와 비교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은 퇴비투입량 결정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 체계적 시비량을 정해 현장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농단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과다사용의 문제점 및 올바른 사용지침서 작성이 요구된다.

⑤ 퇴비의 주재료는 주로 계분, 돈분, 우분이고 보조재료는 톱밥, 왕겨 등이며 퇴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단지가 가장 많았다. (12개소)

유기질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단지의 경우 인근 퇴비제조장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따라서 퇴비제조장과 중소농단지가 연계하여 양질의 퇴비를 공급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⑥ 환경농업 기술 만족도

단지내 환경농업 기술에 대해 만족한다와 보통이다가 총 6개단지나 우리나라 환경농업 기술이 미비하여 부족하다고 느끼는 대표자가 많았다.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표 3-23. 환경농업기술 만족도

환경농업기술만족도	단지(개소)
매우만족	
만족	4
보통	2
불만족	9
매우불만족	

제조와 병해충 방제를 쉽게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꼽았다.

다. 축산분야 환경농업 기술

표 3-24. 축산분야 환경농업 기술

문 항	응답 내용	단지(개소)	문 항	응답 내용	단지(개소)
가축분뇨 처리방법	분과뇨를 섞어 처리	3	자가생산	농작물 부산물	5
	축사자체 자연발효	10		조사료제배	2
	무응답	1		인근 야산채취	1
	축사없음	2		인근지역부산물 구매	2
	액비처리				
사료공급	전체구매	4	가축입식 비율	100%	2
	일부구매, 일부자가생산	9		50%	1
	전체자가생산			20%이하	8
	무응답	1			
자가사료 생산비중	10%이하	1			
	11% - 20%	3			
	21% - 40%	2			
	41% - 50%	2			
	51% - 60%	1			

① 가축분뇨처리는 축사자체에서 자연 발효시켜 경종부분에 퇴비로 공급하는 단지가 전체의 10개소이고 그 다음이 분과뇨를 섞어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② 사료는 일부 단지내 자가생산하고 일부구매하는 단지가 9개소였다. 구매 사료중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특수 주문 사료를 구매하는 단지(유정란 생산)가 7개소였다. 양돈위주의 단지에서는 자가생산한 발효사료와 일반사료를 섞어 공급해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자가사료 비중이 최저 10%에서 최고 60%까지 다양하다.

자가사료 비중을 높혀 구매사료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이용하면 자가사료 비중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사료의 원료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③ 중소농단지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주로 농작물에서 생긴 부산물 이용이 많으나 인근지역 부산물을 얻어오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도시 인근지역 단지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활용방안이 필요하고 도시에 인접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지역내 부산물 이용방안이 필요하다.

④ 단지내 가축 입식비율은 상당히 저조

11개 단지(축산)중 8개단지가 입식이 저조하다. 산란계의 경우 유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지의 시설규모에 비해 낮은 양계수를 입식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 소값 불안정으로 인해 입식이 저조하다. 전남 ○단지의 경우 한우입식을 하지 못하고 개를 키우고 있었으며 전남 ○○단지의 경우는 계

사에서 대기업(하림)의 위탁경영을 받아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다.

7. 환경보전형농산물 유통

조사대상 단지중 중소농사업에 참여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자를 해 본 단지는 없었다. 따라서 중소농사업 이전의 판매 또는 판매계획에 대한 의식 조사이므로 중소농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증가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가. 품질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사 대상 전체 16개 단지중 3개소만 품질인증을 받았다. 중소농단지에서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불신이 많았다.

품질인증제도는 작목반별로 품질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목반원 중 한명의 농약, 비료 사용으로 인해 다른 작목반원의 농산물까지 품질인증이 취소되는 소위 연좌제로 인해 품질인증을 꺼리고 있다.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단지구성원과 받지 않은 구성원이 함께 단지를 구성할 경우, 유통상의 불이익 및 가격상의 큰 차이로 인해 단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물의 일정량이 확보되어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고 산성비때문에 과채류, 엽채류 등의 작물은 노지에서 재배를 하지 못하고 비닐하우스에서만 재배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품질인증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한 토양기준을 마련하여 작물별 품질인증 기준과 토양별 품질인증 기준을 모색하여 노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판매방법

조사대상 단지에서는 직거래와 시장출하를 거의 비슷하게 선호하고 있었다.

직거래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단지는 6개소, 시장출하만을 하는 단지는 7개소, 직거래와 일반시장 출하를 같이 하는 단지는 3개소였다.

직거래 대상은 정농생협, 민우회, 한살림, 풀무원, 광록회 등이었다. 직거래 대상이 주로 서울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 ○단지는 서울과의 왕복시간이 길어 주변 소도시와의 직거래망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다. 경기의 ○단지는 주변 인근도시의 정육점에 직접판매를 하고 있었다. 직거래시 출하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여 함께 결정하는 단지가 6개소였다. '쌀' 등 주곡을 직거래하는 단지에서는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다. 직거래시 농산물 가격은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서 결정되고 있는 경우가 4개소였다. 생산비 보장가격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2개소 있었다. 경기의 ○단지의 대표자는 직거래를 선호하지만 직거래 비중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로 직거래를 통한 판매가 전

표 3-25. 환경농산물 판매 방법

판매 방법 비중	단지(개소)
직거래 100%	6
직거래+일반시장 출하	3
시장출하 100%	7

체농산물 생산량의 0.1%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었다.

다. 환경보전형 농산물 일반시장 출하가격 비교

조사대상 단지중 시장출하하는 단지수는 10개소였다. 이중에서 시장에서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은 단지는 1개소 뿐이었고 나머지 6개소는 시장에서 일반농산물 가격과 비슷했

표 3-26. 공동출하 비중

공동출하비중	100%	90%	80%	60%	30%	5%	무응답	총계
단지(개소)	2	2	1	1	1	1	8	16

다. 일반농산물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은 단지도 3개소나 있었는데 낮은 가격을 받은 이유는 외관상 문제, 판로부족, 유통업자에게 위탁판매를 했기 때문이었다.

라. 공동출하 비중

중소농단지에서 공동출하를 전적으로 하는 단지는 생협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단지였다.

마. 향후 유통계획

중소농단지는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농단지의 소비판매 계획중 직거래 판매를 늘리겠다고 한 단지가 4개소였으며 환경보전형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겠다는 단지는 3개소였다. 백화점 납품을 시도하려는 단지도 1개소였다.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반시장으로 출하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단지에서는 정부와 추진단체에서 판매를 앞선해주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8. 환경농업에 대한 전망

가. 소득 향상

조사대상 단지중 중소농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그전보다 소득의 향상이 있다고 답한 단지가 10개소였고 이중 2개 단지는 소득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곳이었다. 소득향상 이유로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이므로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단지는 4개소였고 재배면적이 늘어 소득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단지는 4개소였다.

나. 환경농업에 대한 막연한 전망

조사대상 단지중 환경보전형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단지는 10개소, 환경보전형 농산물 재배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는 단지는 5개소였는데 대부분의 조사대상단지는 확대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확대를 얼마만큼 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판로에 대한 전망이 없이 막연히 현재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는 단지대표자의 생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고품질생산에 주력하거나 단지내 환경농업 기술이 안정화되기까지 유통문제에서 판로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9. 정책 건의 및 요구사항

가. 중소농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중소농지원사업 참여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은 일선 군 담당자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인식부족이었다. 조사대상중(16개소) 이 설문에 응답한 단지는 8개소였는데 군담당자의 이해부족을 호소한 단지는 4개소였다. 군의 담당공무원이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 중소농지원사업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어 신청서류 접수시 애로를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95년 사업이 첫사업이다 보니 자금이 늦게 집행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충북의 ○단지는 군에서 제시한 축사 및 하우스 설계도는 단지의 규모나 내용에 비해 너무 크므로 자체적으로 설계도를 제작하여 시공하려 했으나 군에서 반대를 해 군의 설계도대로 시공했다.

개별시설중 축사를 건설할 때 환경오염 및 악취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곳은 4개소였는데 이중 충북 ○○단지는 주민들에게 각서를 쓰고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공동시설중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시 전기는 3상 전력이 요구되는데 3상전력을 끌어올 전봇대 설치에서 어려움을 겪은 곳도 있었는데 미생물 생산시설은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전기료가 비싸므로 농업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나. 추진후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조사대상 대부분이 단지조성후 운영자금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소농지원사업 자금중 시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자금을 장기저리융자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 방안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에 환경보전형 농산물 판매장의 확보와 물류센터 설치를 요구하는 단지도 2개소였고 학교급식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식당에 환경보전형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곳도 1개소 있었다.

IV. 중소농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1. 중소농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문제점

이제까지의 조사결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농사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조건 형성

95년 중소농지원사업 단지의 대표자를 살펴보면 연령층은 40대중반이 9개소로 75%를 차지했고 고졸이상의 고학력이었으며 환경보전형농업 경력은 5년이상이었다. 이것은 중소농사업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업참여 농가수의 현실화 필요

1개단지에 보통 9-11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10ha 규모를 짜맞추기 위해 이름만 계획서에 올려 놓은 경우가 있었다. 중소농사업 신청시 10명으로 단지를 구성했으나 단지가 확정된 후에는 5-6명만이 사업에 참여한 단지가 3개소나 되었다. 따라서 중소농사업에 필요한 농가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경북 ○단지의 경우는 11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5명의 구성원(30대 중반)이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나머지 구성원(50대 이상)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출자를 했다. 이때 사업비는 공동시설 설치비를 제외하고 5명의 구성원이 개별시설(비닐하우스, 축사)을 설치하는 대신에 퇴비를 참여농가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다.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단지는 3개소

중소농단지를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구가 있는 단지는 12개소(75%)였으나 정기적인 모임(격주)을 하는 단지는 3개소에 불과했다. 중소농사업 이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사업은 농기계 이용, 원료나 재료 구매, 공동시설 이용 등이다. 이러한 협동이나 협력의 내용이 단지구성 전보다 더 강화되거나 달라진 단지는 10개소로 전체의 63%이다.

라. 공동시설에 과다한 투자

단지당 총 투자규모는 2억5천만원(보조 1억7천5백, 융자 2천5백, 자부담 5천만원)에서 4억원까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동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의 경우와 개별시설(하우스)의 규모를 크게 확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고 시설업체와 이면 계약을 한 단지도 있었다.

마. 공동시설은 미생물 생산시설이 가장 많았으나 사용효율이 낮았다.

공동시설은 미생물 생산시설이 전체(16개소)의 88%(14개소)로 제일 많았다. 공동시설을 소유 및 이용에 따라 i) 개인소유 개인이용형, ii) 공동소유 공동이용형 iii) 공동시설이 없는 단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동시설을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곳은 3개소이고 공동시설을 공동소유하여 공동 이용하는 곳은 12개소, 공동시설이 없는 단지가 1개소였다. 공동시설을 개인소유하여 단지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개인소유 공동이용형의 경우는 없었다.

미생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단지(14개소)중 실제로 가동한다고(2달사용, 3달사용) 판단되는 단지는 2개소뿐이었다. 나머지는 시운전(3개소), 농한기만 이용(4개소), 3회전후 중지(2개소) 등이었다. 정부에서는 95년도 설치된 중소농단지의 미생물 생산시설의 가동율이 66%로 연간 200일 이상 가동하는 것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생물 생산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의 부산물을 경종부분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단지를 구성, 운영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생물 생산시설 용량이 단지의 규모와 구성원에 비해 너무 크다. 현재의 미생물 생산시설 생산능력은 최대 3개월간 1천톤을 생산할 수 있고 경종농가 200농가를 담보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 전술했듯이 미생물 생산시설 이용율이 낮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단지구성원 모두가 사용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신설될 중소농단지는 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기설치된 단지와 공동이용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구입한 냉장차와 저온저장고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유통망 미비로 냉장차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저조한 단지가 4개단지였다. 또한 냉장차 운행에 필요한 물량을 채울 수 없어 운임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저온저장고는 저장할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이용율이 떨어진다. 저온저장고는 동력이 공업용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월 8-12만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전남 ○단지의 경우, 전기료를 물기 위해 외부의 사과를 저장하고 있었다.

바. 환경농업기술이 고투입 미생물제 중심이다.

지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재료는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13개소) 있었고 녹비작물이나 두과작물을 활용하기도 한다(3개소). 퇴비 투입량은 우분의 경우 최대 10ton에서 최소 100kg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경험으로 10a당 평균 2~5ton을 투입하고 있다. (6개소) 또한 퇴비를 10톤 이상 투입하는 단지도 6개소나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지내 환경농업 기술이 작부순환구조에 의한 지력회복보다는 고투입 미생물제를 이용한 환경보전형 농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는 축사 자체에서 자연 발효시켜 경종부분에 퇴비로 공급하는 단지가 1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분과 뇨를 섞어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 단지의 대표자들은 환경농업단체에 복수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고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이유는 환경보전형 농업 기술 등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 환경보전형 농업 기술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농단지 대표자는 환경보전형 농업 기술이 미비하고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초와 병해충 방제를 쉽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꼽고 있다.

아. 축산을 하는 단지의 입식비율이 매우 낮다.

축산을 위주로 하는 11개 단지중 8개단지의 입식비율이 20%이하이다. 한우입식을 하지 못하고 개를 키우는 단지도 있었고 대기업(하림)의 위탁경영을 받아 병아리를 키우고 있는 단지도 있다.

자. 여러 환경농업단체의 기술을 복합, 응용해 시행

단지의 대표자들은 환경농업단체에 복수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이유는 환경농업 기술 등 새로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추천단체가 A단체라 해도 A단체의 고유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B단체의 기술을 응용하여 자기 단지에 맞도록 변형 또는 응용하고 있었다.

차. 추천단체의 사후지도가 부실

추천단체와 단지와의 관계는 추천서 첨부 및 사업계획 수립시 상담, 사후지도인데 사후관리 및 지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실해서 대부분 불만족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천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단지도 있었다. 예를 들면 공동시설 소개에 대한 소개료를 받는 경우, 설계도 사용에 대한 수수료 요구, 잔금 미지급에 따른 미생물 생산시설 가동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카. 직거래 선호

아직 중소농사이에 참여해 농산물 생산, 출하를 해 본 단지가 없어 중소농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증가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부분이 일반시장에 출하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직거래를 선호했다.

2. 중소농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 방향 모색

가.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기본 철학과 관점이 부재

환경보전형 농업은 폭넓고 다양한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 및 복원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 중소농지원정책은 이러한 관점보다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을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다. 해마다 지침의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지만 어디에도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 등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본 철학이 없다.

나. 환경보전형 농업에 알맞은 정책수단 개발 부재

중소농지원사업의 추진방향에 있어 가급적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96년까지 조성된 단지를 도별로 비교해 보면 산간이나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많이 있는 강원도(26개소), 충북(18개소)이 적고 평야지역이 많은 전남(34개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해마다 100개의 중소농단지를 선정할 때 각 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군마다 1개소씩 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농사업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위한 지원정책이라면 군에 1개단지씩 배정하는 것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산간지역이 많고 환경농업 실천농가가 많은 지역에 집중해 조성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 환경보전형 농업을 하는 농가들의 생산방법을

보면 완전한 유기 자연농업이라 할 수 있는 무농약, 무화학비료 재배농가는 전체 환경보전형 농업 농가(6,720호)의 12%이고 재배면적은 781ha이다. 준무농약, 무화학비료 재배는 6%이고, 무농약, 화학비료 사용억제 재배는 16%, 농약 사용억제, 무화학비료 재배는 8%, 나머지 58%는 농약화학비료 사용억제 재배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의 환경보전형 농업은 이제 도입,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므로 완전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환경보전형 농업을 정착 및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농법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전환하려는 농가와 환경보전형농업으로 전환한지 1년차, 2년차된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농사업을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면 환경보전형 농업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해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도 나머지 250여개의 농립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설(공동시설, 개별시설)위주의 대형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농사업이 중소농지원대책의 일환이라면 전업농, 대농위주의 정책지원 수단과 차별적이어야 한다. 시설도 중소농사업 단지의 현실에 적합한 규모의 시설, 환경보전형 농업에 적합한 소규모의 기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중소농사업은 1년에 1회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뿐인데 중소농사업이 발전하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와 환경보전형 농업을 시작한지 1-2년된 농가를 지원하는 전환기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따른 정책수단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비(2억5천만원)를 한번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설에 과잉투자하지 않도록 기반조성시에는 소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환경보전형 농업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필요시설 등을 지원하는 차별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또 사업비중 일부를 운영자금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다. 지역적 특성이나 자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중앙집중적, 획일적인 정책

해마다 100개 단지가 조성되는데 각 군마다의 지역적 조건이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진안군과 정읍의 단지는 지역적 특성이 여러가지로 다른데도 똑같이 미생물혼합기나 발효기, 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 축사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지침의 사업메뉴(하우스시설, 미생물발효기 등)를 다양화하여 지역내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표 4-1. 환경보전형 농업 농가 전국적 분포

(단위 : 호, ha)

구분	무농약 무화학비료 재배		준무농약 무화학비료 재배		무농약 화학비료 사용억제 재배		농약사용 억제 무화학비료 재배		농약, 화학비료 사용 억제 재배		계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계	805	781	367	344	1,038	1,131	557	577	3,908	4,431	6,720	7,264

자료: 농림부, 환경농업 실천농가 현황, 1996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비를 제시하는 것보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라. 형식적인 단지화

중소농지원사업의 핵심은 “단지화”이다. 단지화는 구성원들이 중소농사업을 위해 토지를 공동구입하거나 공동임대해 단지를 조성하고 공동생산 등의 공동활동을 통해 협동의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중소농사업에서는 이러한 단지화의 개념이 전혀 없다. 개별농가들이 따로따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를 공동시설이란 이름으로 설치하고 하우스나 축사를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짓는다. 공동시설도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하고 소유도 공동소유라기보다는 개인소유가 많다. 또한 공동시설에 대해 공동이용을 통한 구성원간의 유기적 관계를 회복하기 보다는 공동시설을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단지에 설치된 공동시설(미생물 생산시설)을 법적으로 공동소유화하고 구성원들이 공동이용하고 나아가 단지 내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단지를 재조성해야 한다. 결국 공동시설 중심으로 지역농장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농단지를 영농조합법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 사후 관리 및 품질 지도계획의 부재

중소농사업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시설만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전형 농법 및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의 짜집기식 환경보전형 농업 기술을 과학적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토양에 알맞는 기술개발을 통해 대안있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사업지침에 따르면 추천단체나 기관에서 지도책임자를 선

정해 기술 경영지도를 책임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서 제출시 추천서에 책임지도자를 명시하고 그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정책 집행에 따른 책임을 추천단체 및 민간단체에 전가하려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또한 기술지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생산물에 대한 점검 및 품질관리다.

바. 소비 유통에 대한 대책이 소홀.

환경농업이 올바르게 정착, 확산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에 기초한 소비 유통이 유기적 연관성을 맺어야 한다. 해마다 100개소씩 환경농업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이 단지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 판매는 중소농단지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지침에는 생산기반 시설만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에 대한 대책은 단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품질인증 제도뿐이다. 또한 농협과 백화점 중심의 유통방식만을 고려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때만이 생산이 지속될 수 있다. 환경보전형 농산물을 소비유통해 왔던 소비자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중소농지원사업의 단지화 분류 및 의의

가. 단지화의 의의와 조건

단지화란 개별구성원이 공통된 이익 증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집단을 구성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은 집단의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해야 하며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소농사업에서의 단지화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정착과 확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라는 목표를 위해 기존의 환경보전형 농업의 선도농가 중심으로 단지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 영농단체에 맞는 사업계획(환경보전형 농업생산 계획, 공동시설 활용방안, 경종-축산농가의 유기적 관련, 판매 계획 등) 및 재정계획을 설정하고 부지를 공동구입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공동투자, 정부자금 지원 등)해 내부조직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추어 협동의 틀을 구축한다. 이와같은 사업추진 체계에 따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단지화의 내용(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집단이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공동구입하여 공동시설(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등)과 개별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시설과 개별시설간에 유기적 관련성을 추구한다.
- ② 단지가 구조화되어 내부조직을 갖고 이에 따른 구성원 간 지위와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
- ③ 집단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 ④ 집단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간 협력의 내용(공동생산, 공동이용, 공동구입, 공동출하)을 지닌다.
- ⑤ 집단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시설(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등)의 이용을 통한 협력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

나. 중소농단지의 분류

위에서 살펴 본 단지화의 기준을 근거로 중소농사업 단지를 공동시설의 소유와 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1 유형 : 공동생산, 출하 단지

- ① 공동구입한 부지에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을 설치하고 구성원간 공동생산(파종, 경운, 제초, 수확),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판매하는 단지
- ②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등 공동시설이 공동소유이고 단지 구성원이 공동이용하는 단지
- ③ 단지내 운영기구가 있고 정기모임이 격주로 1회 이상인 단지
- ④ 단지내에서 작목배정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2 유형 : 공동시설을 공동소유하고 공동이용하는 단지

- ① 공동시설을 공동소유하고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단지 구성원이 모두 이용하는 단지
- ②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운영하여 퇴비등 생산물을 단지

구성원에게 나누어주는 단지

- ③ 단지의 운영기구가 있고 정기모임이 1달에 한번씩 있는 단지

3 유형 : 공동시설을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단지

- ① 단지대표자 소유 토지에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대표자가 소유하고 대표자만 이용하는 단지

② 단지구성원중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필요로하는 구성원이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하고 소유자만 이용하는 단지

4 유형 : 개별시설(하우스, 축사)위주의 단지

- ① 개별시설(하우스, 축사)위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② 단지 운영기구가 없고 단지구성원간 정기모임이 없는 경우
- ③ 사업확정후 개별 지분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단지가 해체된 경우

다. 단지화 사례 - 제천송학애농영농조합법인

① 단지개요

제천에서 영월쪽으로 약 6km 떨어진 송학산 기슭에 위치한 단지로 송학감리교회의 임대성목사 중심으로 오랫동안 유기농법을 실천해 왔다.

단지구성원은 16농가이고 주로 기독교인 중심이고 정농회 회원이다. 단지구성원은 쌍용면 5명, 송학면 6명, 시곡2리 5명이다. 회원의 연령은 40세 4명, 50세는 5명, 60세 7명이다. 환경농업(유기농업) 년수는 5년 이상이다.

단지 구성은 옥우 15두, 양돈 80두, 양계 2,000수 정도이고 비닐하우스는 2,000평이다. 94년도에 농산물검사소에서 송학애농단지를 방문하여 중소농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 참여를 권유했다. 그리하여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중소농사업을 신청했다.

② 투자 현황

공동시설로는 냉장차 1대(1,400만원), 트랙터 + 로타(1,400만원), 분쇄기(1,000만원), 건초 절단기(1,000만원), 덩프차(1,000만원) 등의 시설이 있고 퇴비사(2동 200평 4,000만원), 예냉시설(6평), 저온저장고(6평 4,000만원) 등 총 1억3천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축사(300평)는 평당 26만원으로 7천8백만원, 하우스(800평)는 5천2백만원으로 총 2억6천8백만원이 들었다. 퇴비사나 축사, 하우스를 짓는데는 회원 모두 공동으로 참가해(2달간) 인건비가 한푼도 안들었다.

회원의 대부분은 자부담의 비용을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리지 않고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부담했다. 회원들은 중소농사업 이전에 농협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

③ 단지의 특징

정기모임은 한달에 한번씩하고 논의되는 내용은 영농에 대한 기술교류, 유통문제, 작목의 선정과 배분 문제 등이다. (연작피해 방지) 이들은 퇴비를 만드는 데에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안정된 퇴비를 만들수 있다. 현재 퇴비는 양계사에서 나오는 발효퇴비를 토양에 환원하고 있다.

이 단지의 유통은 생협(정농생협, 민우회)에 60%를 공급하고 이는 사람에게 40%를 팔고 있다. 총무가 직접 1주일에 두번씩 서울로 운송하고 있다. 그런데 1주일 물량이 상당히 작다. 조사기간 중 고추(건고추)를 제외하면 상당히 작은 물량(약 70-80만원)만이 운송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은 서울로 운송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근교도시인 제천, 충주 등에도 직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 또 유기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 소시지는 가공해 주문판매하고 있다. 소시지는 중소농 단지의 물품은 아니나 감리교회의 2가지 중요물품 중의 하나이다. 산채를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계획도 있다. 현재 영농법인의 총무가 비닐하우스에서 산채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데 일본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단지에는 품질인증 물품이 없다. 왜냐하면 품질인증에는 일정량의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보니 일정량 이상의 생산이 불가능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다.

현재 직거래로 100% 소비하고 있지만 단지의 생산 전량이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예로 열무 100평의 생산량 전부가 소비가능하다면 생산비가 보장되는데 100평(2,600포기)의 열무중 주문생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한꺼번에 소비되면 1년에 2기작이 가능하지만 주문생산으로는 주문받아 판매할 때까지 비닐하우스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④ 이 영농조합법인은 회원이 전형적인 1ha미만의 중소농으로 이전부터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중소농사업 초기에 정부에서 서둘러 사업을 완료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한 것 보다 자부담이 많이 들었다. 1인당 거의 500만원 가량을 자부담했다.

또한 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은 중소농사업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데에 기인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

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군청에서 시행하라고 한 것을 모두 고스란히 시행한 우직함도 있었다. 영농조합법인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설계를 제작해 시공하려 했으나 군에서 허락하지 않아 군의 설계도대로 시공했다.

또한 소값이 가장 높은 겨울에 송아지를 입식하라고 당달하는 군청직원의 말에 어쩔수 없이 겨울에 송아지를 입식(3명 각5두씩 15두)해 현재 손해를 보는 것도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이 단지는 일본 야마가다현(BMW방법)과 자매결연을 맺어 해외(일본)연수를 자주 가는 편인데 상호 서신이나 전화연락이 빈번해 해외 환경농업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빠르게 알고 있다.

특이한 점은 작목선정을 구성원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한 후 작목을 선정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며 '공동체'라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V. 결 론

중소농지원사업은 95년부터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과 연계해 중소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되어 왔다. WTO체제 출범 이후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영농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중소농 지원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중소농지원사업은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 즉 환경보전형 농업에 의해 소량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단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매년 100개단지(2004년까지 1,000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즉 유기 자연 토종농업 단지를 해마다 100개씩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의 육성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은 단지화, 협동화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단지에 필요한 시설을 공동시설과(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개별시설로(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 나누어 공동시설에 1억5천만원, 개별시설에 1억원으로 단지당 2억5천만원(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1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소농지원 정책에는 '단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가?

단지화는 중소농들이 단지(토지)를 매개로 협동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기초로해 경쟁력을 갖추고 협동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소농지원사업에는 단지화의 내용이 희박하다. 단지를 매개로 협동의 틀을 구축하기보다는 공동시설을 매개로 단지구성원 간의 협동을 유도하겠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공동시설은 앞에서 전술했듯이 단지규모와 시설이용률을 볼때 과잉이다. 따라서 중소농지원사업이 보다 올바르게 추진되려면 이 공동시설의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추천서 남발과 형식적인 지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우선 올바른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농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추천단체의 사전 지도가 요구된다. 추천단체는 단지구성원들의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의지, 그 지역에 적합한 환경보전형 농업의 내용, 유통대책, 등을 조사하여 단지구성원들과 함께 그 지역에 알맞는 중소농사업(환경보전형 농업)을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천단체는 중소농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지도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요구된다.

인용문헌

1.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소비단체협의회는 1997년 1월 3차 정기총회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그의 상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소비단체협의회 창립총회 자료집과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환경농업』제1호, 1996.를 참조.
2. 이 회의는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환경보전에 대한 행동계획을 명확히 했다. 스톡홀름회의 이래 20년 동안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야생생물종의 감소 등 새로운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계획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다. 이번 [아젠다 21]속에는 환경 ODA(정부개발원조)로서 GNP 대비 0.7%의 지출을 확인함과 함께 이용가능한 자금원 및 메카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조달(지역개발은행, 유엔의 모든 전문기관, 민간자금 등)할 것 등을 명확히 했다.
3. JA全中, 『月刊 JA』, 1996.12, 31쪽.
4. 예를 들어 비료 농약에 과징금을 적용하는 한편, 저투입 등의 비집약적 농법을 지원하는 보조금에 의해 환경부하를 경감하는 2중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소비단체협의회, 『지속가능한 농업의 세계적추세』, 1996.
5. 매매가능배출권은 오염수준에 대한 환경허용량(저래총량), 예를 들어 구입비료에 대한 질소분을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해 각 농가에 할당하고 그것을 전제로 매매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해 거래한다. 유해물의 환경허용량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환경부하를 경감하고자 한 것이다.
6. 오세익 외,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12. 71-72쪽.
7. 여기에서의 지역농업론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6.12.의 관련부분을 요약 정리한것임.
8. 일본에서 [지역농업]론이 대두되는 배경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할것. 박진도, [일본에서의 지역농업론의 전개], 『국제특점자본과 한국농업』, 백산서당, 1992.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농업구조재편과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1993. 박진도,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한길사, 1994.
9.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6. 12.
10. 農林水産省 監修, JA 全中, JA 全農 編, 『環境保全型 農業の流通と販賣』, 1995, 家の光協會.
11. 농촌진흥청,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태와 기술평가]-유기자연농업을 중심으로』, 1995. 8쪽.
12. 일본농업신문 97. 1. 6.
13. 농림부,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 1996.
14.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중소농이란 농업수입만으로는 가계비 충족이 어려운 농가를 지칭하는데 경종농업을 기준으로 1ha 이하의 농가이며 축산 채소 농가의 경우는 경종농업 1ha 규모의 농가가 얻는 소득수준(천7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WTO체제 출범에 대응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1994.11. 37쪽.)
15. 농어촌발전위원회는 1993년 12월 15일 GATT-UR협상의 타결로 인해 타격을 입게될 농업, 농민에 대한 발전

대안을 마련하고자 정부의 제의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농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발전 위원회,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1994. 7. 참조.

16. 시장, 군수는 중소농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신규 발굴될 경우, 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17.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은 원하는 단지에만 지원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축사나 하우스 등을 확대할 수 있음.
18. 농림부, 「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1997. 27쪽-30쪽.
19. 정부에서는 95년도 설치된 중소농단지의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가동율을 66%로서 연간 200일 이상 가동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 정부에서는 예냉시설, 냉장차의 연가동율을 60% 내외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태연(1995), [EU농업정책에 있어서 직접소득보조의 역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민과 사회, 제8호.
2. 김 호(1995), [환경보전형농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민과 사회 제8호.
3. 농림부(1996),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
4. 농림부(1997), 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5. 농림수산부(1994), WTO체제 출범에 대응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6. 농림수산부(1994), WTO체제 출범에 대응 농림어업부문 기본대책.
7.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
8. 농림수산부(1995),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교재.
9. 농림수산부(1996), 중소농사업정보.
10. 농림수산물환경연구포럼(1997),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사업 정착을 위한 세미나.
11. 농어촌발전위원회(1994),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1994. 7.
12. 농정연구포럼(1997), 유기농산물 생산및 유통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45회 정기월례세미나 경과보고서.
13. 농촌진흥청(1995),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태와 기술평가

- 유기 자연농업을 중심으로.

14. 농협중앙회조사부(1996), 환경농업의 생산 유통 현황과 발전방향, 조사연구보고 96-17.
15. 박진도(1992), [일본에서의 지역농업론의 전개], 국제독점자본과 한국농업, 백산서당,
16. 박진도(1994).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한길사.
17. 오세익외(1993),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12.
18. 이필렬외(1994), 교양환경론, 따님.
19. 일본농업신문 97. 1. 6
20. 정진영외(1996), 지금 왜 환경보전형농업인가, 농민신문사
21.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1993), 농업구조재편과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22.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1996),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
23.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1994),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창립총회.
24. _____(1995), 환경농업 제1호.
25. _____(1996), 지속가능한농업의 세계적 추세.
26. _____(1996), 환경농업육성법 백서.
27. 흙살림연구소(1996), 환경농업교육자료집.
28. JA全中, 全農 編(1995), 環境保全型 農業の流通と販賣, 家の光協會
29. 嘉田良平 (1996), 農政の轉換, 有斐閣.
30. 高橋信正(1986), 農業生産組織の論展開, 明文書房.
31. 久保 嘉治 外(1994), 地域農業の活性化と展開前略.
32. 久宗 高(1993), 環境保全型農業と世界の經濟, 農文協.
33. 兒玉 明人(1997), 中山間地域農業 農村の多様性と新展開, 富民協會.